

※ '00.12.29. 지방교육세 신설, '01.1.1 시행

○ 개요

-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에 부가하는 목적세

○ 납세의무자

- 취득세(부동산, 기계장비, 항공기 및 선박), 등록분 등록면허세, 레저세, 담배소비세,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, 재산세 및 자동차세(비영업용 승용자동차)의 납세의무자

○ 과세표준 및 세율

- 취득세액(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)의 100분의 20
-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
- 레저세액의 100분의 40
-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의 각 100분의 10(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)
- 재산세액(도시지역분 제외)의 100분의 20
-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
- 담배소비세의 10,000분의 4,399

○ 부과·징수방법

- **신고납부** 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레저세, 담배소비세,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
- **부과징수** : 주민세 개인분, 재산세, 자동차세를 부과·징수하거나 세관장이 담배 소비세를 부과·징수하는 때